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3. 1.



여성가족부

법제처 심사 전

1. 개정이유

사회적·경제적 요인으로 일정 기간 이상을 집이나 한정된 공간에서 외부와 단절된 상태로 생활하여 일상생활이 현저히 곤란한 은둔형 청소년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이를 고려하여 현재 위기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생활비·의료비·학업비 지원 및 심리 상담 등의 특별지원 대상에 은둔형 청소년을 새롭게 규정하여 이들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

또한 현재 청소년복지시설 설치·운영 시에 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하도록 하고 있으나, 가입 금액이 여전히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정 당시('05.3월) 기준을 유지하고 있어, 청소년들의 안전 보장 책임 강화를 위해 다른 재난안전의무보험 보상한도에 준하여 보험금액을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음.

2. 주요내용

가.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대상 청소년에 ‘은둔형 청소년’ 포함(안 제8조)

외부와 단절된 상태로의 생활이 장기화되어 일상생활이 현저히 곤란한 은둔형 청소년에게도 지원이 필요한 사정으로 인하여, 위기 청소년 특별지원 대상에 정상적 또는 일상적인 생활이 현저히 곤란한 청소년을 추가하여 지원하도록 함.

나. 청소년복지시설 보험가입금액 상향(안 제16조)

청소년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청소년 등의 안전 보장 책임 강화를 위해, 청소년복지시설이 가입하여야 하는 의무보험의 손해배상 보장금액 중 사망 시 금액 한도를 8천만원에서 1억 5천만원으로 상향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사회·경제적 요인 등으로 인하여 일정기간 이상을 집이나 한정된 공간에서 외부와 단절된 상태로 생활하여, 정상적 또는 일상적인 생활이 현저히 곤란한 청소년

제16조제1호의 “8천만원”을 “1억 5천만원”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제1호의 보험금액은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험가입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보험에 가입한 자로서 제16조제1호의 보상기준에 미달하는 자는 2024년 1월 1일 전까지 개정규정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특별지원 대상 청소년 선정 기준) ①법 제14조에 따른 특별지원 대상 청소년(이하 “특별지원대상청소년”이라 한다)은 해당 청소년이 속한 가구의 소득이 일정 기준금액 이하인 청소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기청소년 중에서 선정한다.	제8조(특별지원 대상 청소년 선정 기준) ①----- ----- ----- ----- ----- ----- -----.
1. ~ 3. (생략)	1. ~ 3. (현행과 같음)
<u><신설></u>	4. <u>사회·경제적 요인 등으로 인하여 일정기간 이상을 집이나 한정된 공간에서 외부와 단절된 상태로 생활하여, 정상적 또는 일상적인 생활이 현저히 곤란한 청소년</u>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제16조(청소년복지시설의 보험 가입) 청소년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법 제32조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의 보험금액의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급되는 보험금액은 실손해	제16조(청소년복지시설의 보험 가입) ----- ----- ----- ----- -----.

액(實損害額)으로 하되, 사망의 경우 실손해액이 2천만원 미만 인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한다. 1. 사망의 경우: <u>8천만원</u> 2. ~ 6. (생략)	----- ----- -----. 1. ----- <u>1억 5천만원</u> 2. ~ 6. (현행과 같음)
---	--

〈 의안 소관 부서명 〉

여성가족부 청소년자립지원과	
연 락 처	(02) 2100 - 6272